

##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회계과

제정 1996·3·1 조례 제 71호  
개정 2000·1·13 조례 제 315호  
(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)  
개정 2004·3·22 조례 제 481호  
개정 2008·10·20 조례 제 727호  
일부개정 2014·4·10 조례 제1032호  
일부개정 2018·5·18 조례 제1396호  
일부개정 2022·4·22 조례 제1825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2·4·22]

**제2조(위원의 정수)**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. 다만, 이천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〈개정 2022·4·22〉

**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**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. 〈개정 2018·5·18〉

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18·5·18〉

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 따른다. 〈개정 2018·5·18, 2022·4·22〉

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 〈개정 2018·5·18〉

**제4조(위촉기간)**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·5·18〉

**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** ① 이천시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. 〈개정 2018

· 5·18, 2022·4·22>

② 이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·자녀·형제·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2·4·22>

**제6조(대표위원)**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18·5·18, 2022·4·22>

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. <개정 2018·5·18, 2022·4·22>

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8·5·18, 2022·4·22>

**제7조(결산검사 사항 등)** 결산검사 사항 및 절차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8·5·18]

**제8조(검사협조)**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·4·22>

**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**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한다. <개정 2018·5·18>

**제10조(수당의 지급)**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·5·18, 2022·4·22>

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. <개정 2018·5·18, 2022·4·22>

[제목개정 2018·5·18]

**제11조(수당의 계산)**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한다.

다만,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2018·5·18, 2022·4·22>

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을 포함한다. <개정 2022·4·22>

[제목개정 2018·5·18]

**제12조(여비의 지급)**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별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. <개정 2018·5·18, 2022·4·22>

**제13조 삭제** <2018·5·18>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·1·13 조례 제315호,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생략**

부칙 <2004·3·22 조례 제48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·10·20 조례 제72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4·10 조례 제103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5·18 조례 제139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4·22 조례 제182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별표] <개정 2018.5.18>

검사위원의 수당·여비 지급 기준 (조례 제10조 및 제12조 관련)

구 분	금 액
수 당	150,000원/1일
여 비	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상 이천시의 경우는 부시장 상당액

[별지 서식] (조례 제3조제4항 관련) <개정 2018.5.18>

위 축 장

○ ○ ○

이천시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 부터  
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 ○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이천시 의회의장 (인)